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겓	
람	
H	



제574호 2023. 4. 20.(목)

훈 령

고성군 훈령 제477호 고성군 민원봉사과 근무 규정 폐지훈령 2

고 시

공 고

회					
꼭					
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민원봉사과 근무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20일

고성군 훈령 제477호

고성군 민원봉사과 근무 규정 폐지훈령

고성군 민원봉사과 근무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시 제2023-54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 4. 12.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cap	도로명주소	벼겨	느
	エエマイエ	ᄬᄼᄭ	$\overline{\Delta}$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송학리 238-83	고성읍 송학고분로344번길 42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송학고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3,44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2	마암면 도전리 239-6	마암면 도전1길 191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도전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3	고성읍 송학리 244-43	고성읍 송학로 168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송학리)을 이용하여 송학로로 명명	
4	대가면 양화리 291	대가면 양화2길 48-27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양화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5	동해면 외산리 산150-3	동해면 외산1길 54-15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6	동해면 외산리 680-10	동해면 외산1길 204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7	동해면 외곡리 134	동해면 외곡5길 183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곡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8	영오면 연당리 809-1	영오면 연당1길 49-1	2023. 04. 12.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연당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 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동해면	내산1길 27	2023.04.12.	건물 멸실	
2	동해면	외곡5길 183	2023.04.1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3	영오면	연당1길 49-1	2023.04.12.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3-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 2023. 4. 18. 고 성 군 수

- 1. 허가번호: 고성2023-02호
- 2. 하천의 명칭: 용산천외 4(지방하천)
-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고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따른 지질조사를 위한 하천점용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249-11번지외 5개소
 - 면적: 126㎡(일시점용 12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점용기간: 2023년 4월 18일 ~ 2023년 7월 31일
- 7. 문의처: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3-6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 4. 19.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2			결 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bigcap	도로명주소	벼겨	드
()	ユエママニ	77/8	$\overline{}$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판곡리 477-1	삼산면 판곡2길159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판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2	삼산면 두포리 205-1 외 2필지	삼산면 두포6길 54-35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3	회화면 배둔리 449-34	회화면 배둔중앙22번길 18-6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배둔중앙길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22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4	동해면 양촌리 356-10	동해면 양촌6길 90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양촌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5	동해면 외산리 8-10	동해면 외산로 648-7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6	마암면 보전리 1332-1	마암면 보전1길 339-1	2023.04.1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보전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고성군 공고 제2023-675호

공시 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8. 고 성 군 수

-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4.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רון גל דן	성명	이옥*				
대상자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24번길 **, ***호				
부동산의	의표시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0-2				
처 분 하 하 는		금625,400원(금육십이만오천사백원)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기 타		공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처: 경남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
 - T. 055-670-2693 F. 055-670-2159